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28호(號)　1927(昭和 2)년 9월 30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14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0(大正 9)년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 사고(社告) 제27호(號)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,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사와야마형제상회[澤山兄弟商會] 연락화물운송규칙(聯絡貨物運送規則) 중(中) 1927(昭和 2)년 10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9월 30일　　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1조(條)　연락운송(聯絡運送)의 취급구간(取扱區間) 및 접속역(接續驛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 단(但) 취급상(取扱上) 특수(特殊)한 제한(制限)을 부가(附加)한 역소(驛所)는 그 제한(制限)에 의(依)함.

가　구간(區間)

만철선발(滿鐵線發)

만철선(滿鐵線) 각(各) 역발(驛發) 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戶), 효고(兵庫), 오노미치(尾道), 시모노세키(下関), 모지(門司), 고쿠라(小倉), 하카타(博多), 나가사키(長崎) 항착(港著)

사와야마항로발[澤山航路發]

사와야마항로[澤山航路] 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戶), 효고(兵庫) 항발(港發) 만철선(滿鐵線) 각(各) 역착(驛著)

나　접속역(接續驛)

만철(滿鐵)	단동역(安東驛)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	부산역(釜山驛)
동(同)	초량역(草梁驛: 시모노세키[下関], 모지[門司], 고쿠라[小倉] 착(著)에 한[限]함)

제2조(條)　아래[左]의 화물(貨物)은 관계운수기관(關係運輸機關)에서 특히 승인(承認)한 경우 외(外) 연락운송(聯絡運送)의 취급(取扱)을 하지 아니함.

가　오사카(大阪), 고베(神戶) 및 효고(兵庫)의 각(各) 항(港) 발착(發著) 및 오노미치(尾道) 항착(港著)

1　1개(箇)의 중량(重量) 8백 근(斤) 용적(容積) 60입방척(立方尺), 길이[長] 18척(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2　급외품(扱外品) 제1종(種) 화약류(火藥類)

3　급외품(級外品) 제2종(種) 위험품(危險品)

4　급외품(級外品) 제3종(種) 가축(家畜) 및 살아있는 동물[生動物]

5　급외품(級外品) 제4종(種) 철도차량(鐵道車輛)

6　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)

7　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

8　급외품(級外品) 제7종(種) 오예(汚穢)한 물품

9　열차(列車)를 지정(指定)하여 운송(運送)한 화물(貨物)

10　임시열차(臨時列車)로 운송(運送)한 화물(貨物)

나　모지(門司), 시모노세키(下関) 및 고쿠라(小倉)의 각(各) 항착(港著)

1　목재(木材) 및 콩깻묵[豆粕] 이외의 것

2　가1, 9, 10에 게시(掲示)한 것

다　하카타항(博多港) 및 나가사키항(長崎港) 착(著)

1　목재(木材), 콩깻묵[豆粕], 쌀[米], 대두(大豆) 및 소두(小豆) 이외의 것

2　가1, 9, 10에 게시(掲示)한 것